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48 발의연월일: 2024. 9. 20.

발 의 자:김민석·김병주·박선원

부승찬・조 국・허 영

안규백 • 황 희 • 박범계

추미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 제77조제5항에 따르면,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,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해제하여야 함.

그러나 2017년 반정부 활동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간 주하여 체포하거나 구금하여 계엄해제를 방해하는 내용의 문건이 발 견됨으로써 헌법에 따른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 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킦.

이에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에도, 국회가 계엄 해제 등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해당 국회의원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기 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보장하고자 함(안 제11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,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국회가 계엄 등과 관련된 논의 등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 우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		개 정 안
제11조(계엄의	해제)	1	~ ③	제11조(계엄의 해제) ① ~ ③
(생 략)			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		④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,
				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제1
				항에 따라 국회가 계엄 등과
				관련된 논의 등을 위하여 회의
				를 소집할 경우 즉시 회의에
				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
				<u>한다.</u>